

●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-103호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7조, 제79조, 제82조에 따라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

< 강원특별자치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·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>

1.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

○ 위치 및 면적

No	위치	면적(m ²)
1	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57번지, 359번지 일원	159,987
2	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520번지 일원	216,308
3	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49번지 일원	137,270
합 계		513,565

2.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 목적 : 강원도의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제조산업 활성화
- 지정 기간 : 2023. 05. 01. ~ 2027. 04. 30. (4년)

3.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

- 사업명 :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·활용 기술 실증
- 내용 : 합성가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·활용 실증

4.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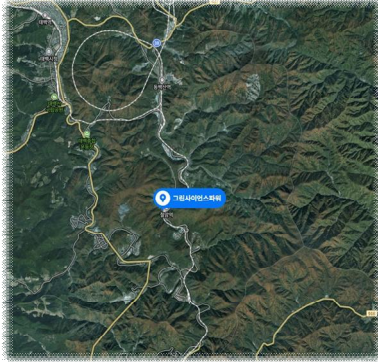
No	특구사업자명	대표자명	주소
1	(주)그린사이언스	이봉주	강원도 태백시 계산11길 62
2	(주)SK에코플랜트	박경일	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
3	제이엔케이히터(주)	김방희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-1401호
4	(주)제아이엔지	박인규	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25, 614호
5	(재)강원테크노파크	김성인	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

5.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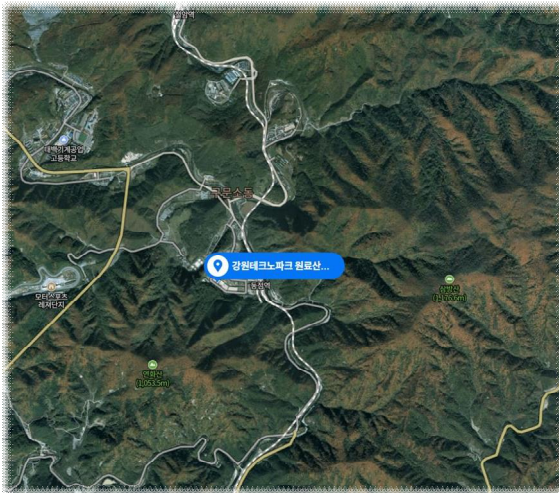
○ 사유 : 지자체의 자진철회

○ 효력 :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,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,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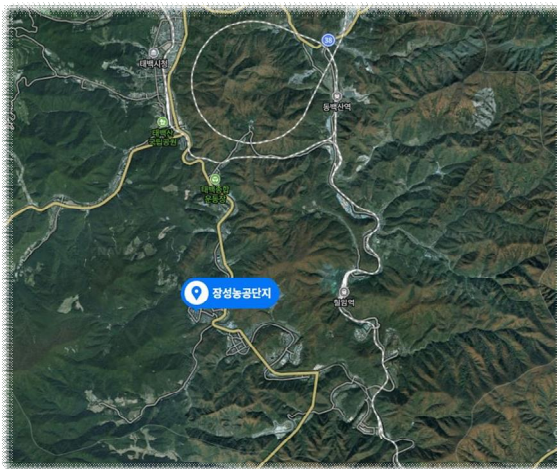
6.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



<태백시 철암동 일원 (철암농공단지 일대)>



<태백시 동점동 일원(동점산업단지 일대)>



<태백시 장성동 일원(장성농공단지 일대)>

7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: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(Tel : 033-520-7365, www.provin.gangwon.kr)에서 열람할 수 있음